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24. 11. 12 선고 2023가단124924 판결 [사해행위취소]

전 문

원고A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명천

담당변호사 최종원

피고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로웰

담당변호사 김동섭

변론 종결 2024. 9. 24.

판결 선고 2024. 11. 12.

주 문

1. 피고와 C(주민등록번호 1 생략)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각 1/6 지분씩에 관하여 체결된 2020. 5. 7.자 상속재산분할협의를 50,469,588원의 범위 내에서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50,469,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N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개명 전 이름: D)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5. 23. 선고 2023가소1344387 판결로 확정된 "33,989,795원 및 위 돈 중 7,291,06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 상당의 판결금 채권(이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이라고 한다)을 가지고 있다.

나. 이 사건 판결금 채권은 원고가 2013. 5. 14. 연대보증인 중 1인인 C을 상대로 받았던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차전98609호 양수금 사건 지급명령 정본에 기한 채권과 동일한 채권이다. 위 지급명령은 2013. 6. 3. C에게 송달되었고, 2013. 6. 18. 확정되었다. 위 지급명령에 첨부된 청구원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청구원인

1. 당사자들의 지위

가. 채무자는 신청외 (주)E과 대출거래약정을 맺고, 그 대출금을 사용한 뒤 연체한 채무자이고, 채권자는 신청외 (주)E으로부터 최종적으로 채권을 양수한 채권자입니다.

나. 채무자의 대한 채권 및 제반부수권리 일체는 신청외 (주)G에게 양도하였고, 이는 또한, 2011. 2. 25. 신청 외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양도되었으며, 최종적으로 2012. 9. 18. A 주식회사에게 양도된 뒤, 동 사실을 채무자에게 통지하였고, 정당한 채권자의 지위를 얻게 되었습니다.

2. 채무자는 대출금을 다음과 같이 사용하였습니다.

가. 대출과목 : 일반대출

나. 대출일: 1996. 12. 23.

다. 대출금: 30,000,000원

라, 연체율: 17%

마. 원리금 : 33,989,795원

바. 원금잔액 : 7,291,060원

사. 이자: 26,698,735원

아. 기산일: 2013. 5. 10.

자. 보증인: D

3. 결론

위와 같이 채무자는 기한이익을 상실하고, 채권자의 지급요청에도 불응하고 있으므로, 채권자는 대출거래약정에 따른 대출원금 및 지연손해금을 변제받기 위하여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과 같이 이 사건을 신청하게 되었습니다.

다. 피고와 H, I, J, K, C 총 6인은 형제 사이이다.

라. 위 형제들의 모인 망 N가 2019. 11. 30. 사망하면서, 위 형제들은 2020. 5. 7.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이하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피고가 4/6 지분을, H, J가 각 1/6 지분씩을 상속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이하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마.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를 따라 2020. 5. 14.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바. 법원행정처에 대한 사실조회 결과 C이 2019. 1. 1.부터 2023. 8. 31.까지의 기간 동안 부동산을 소유한 사실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C에게 별다른 재산이 있었다고 볼 만한 자료 또한 없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8호증, 을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피보전채권의 존재

C이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판결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음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채권은 2013년경 이미 발생한 사실도 인정되므로, 이는 피보전채권이 된다.

나. 사해행위의 성립

1) 관련 법리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상속이 개시되어 공동상속인 사이에 잠정적 공유가 된

상속재산에 대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각 상속인의 단독소유로 하거나 새로운 공유관계로 이행시킴으로써 상속재산의 귀속을 확정시키는 것으로 그 성질상 재산권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이므로 사해행위취소권 행사의 대상이 될 수 있고, 한편 채무자가 자기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매각하여 소비하기 쉬운 금전으로 바꾸거나 타인에게 무상으로 이전하여 주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사해행위가 되는 것이므로, 이미 채무초과 상태에 있는 채무자가 상속재산의 분할협의를 하면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함으로써 일반 채권자에 대한 공동담보가 감소한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채권자에 대한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7다29119 판결 참조).

사해행위 취소소송에서 수익자 또는 전득자의 악의는 추정된다(대법원 1994. 6. 14. 선고 94다2961, 2978 판결, 대법원 2006. 9. 8. 선고 2005다52917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 당시 C은 별다른 재산이 없고 원고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등 채무초과 상태에 있었던 사실이 인정되므로, 위 사람이 이 사건 각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1/6)을 포기하는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하는 행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해행위에 해당되고, 채무자인 C은 당시 상속재산분할협의로 인해 공동담보에 부족이 생겨 일반채권자를 해할 것을 알았다고 볼 것이며, 수익자인 피고의 악의도 추정된다.

다.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의 방법

1) 사해행위취소 앞서 본 바와 같이 C이 피고와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자신의 상속분(1/6)을 포기하는 내용의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행위는 일반채권자를 해하는 사해행위에 해당되므로,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2020. 5. 7. 체결된 상속재산분할협의 계약은 취소되어야 한다.

2) 원상회복의 방법 그런데 어느 부동산의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매매계약을 취소하고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 등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여야 하지만, 그 사해행위가 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 당해 저당권자 이외의 자와의 사이에 이루어지고 그 후 변제 등에 의하여 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된 때에는, 매매계약 전부를 취소하여 그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명하는 것은 당초 담보로 되어 있지 아니하던 부분까지 회복시키는 것이 되어

공평에 반하는 결과가 되므로,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공제한 잔액의 한도에서 그 매매계약의 일부 취소와 그 가액의 배상을 구할 수 있을 뿐 부동산 자체의 회복을 구할 수는 없다(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3207 판결).

위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보면 이 사건 각 부동산 중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L호)에 관하여 2009. 1.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90,000,000원, 채무자 B(피고), 근저당권자 주식회사 M으로 하여 마쳐진 2번 근저당권,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망 N,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마쳐진 4번 근저당권, 2020.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58,460,628원, 채무자 B, 근저당권자 국으로 하여 마쳐진 5번 근저당권 각 설정등기가 2020년 10월경 및 11월경 각 말소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는 사해행위 후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말소되어 원물반환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수익자인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에게 사해행위취소 범위 상당의 가액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3) 가액배상 가액배상의 경우 그 부동산의 가액에서 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하여야 하고(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1다33734 판결 등 참조), 사해행위 이전에 부동산에 관하여 임대차계약이 체결되었고 임차인에게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우선변제권이 있다면, 부동산 가액 중 임대차보증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일반채권자의 공동담보에 제공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수익자가 반환할 부동산 가액에서 우선변제권 있는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액도 공제해야 한다(대법원 2018. 9. 13. 선고 2018다215756 판결 등 참조).

이 경우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하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시보다 증가했으면 채권최고액의 범위 안에서 증가한 전액을 공제하고, 피담보채무액이 사해행위 시보다 감소했으면 사해행위 당시 피담보채무액을 공제한다. 또한 부동산의 매매계약 등이 사해행위에 해당되어 취소되고 수익자에게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물반환이 아닌 가액배상을 명하는 경우, 그 부동산에 대한 가액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하고(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다6711 판결 참조), 사해행위를 취소하고 가액배상을 하는 경우 그 원상회복의 범위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그리고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이 된다.

가) 채권자의 채권액: 사실심 변론종결시인 2024. 9. 24.를 기준으로 한 원고의 채권액은

33,989,795원에 그 중 원금인 7,291,060원에 대하여 2013. 6. 4.부터 2024. 5. 14.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인 16,479,793원¹⁾의 합계액인 50,469,588원이다.

나)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시가 등 사정에 따라 계산된

공동담보가액 및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은 아래 표와 같다. 순번은 별지 목록 부동산 기재 순서에 따른

것이다.

1	142,166,509원 ⁴⁾ 갑 제18호증 '가격참고자료'에 나타난 비교부동산 2개의 m ² 당 평균가액인 2,897,809원 × 49.06m ²		142,166,509원	23,694,418원
2	142,166,509원	20,000,000원	122,166,509원	20,361,084원
3	142,166,509원		142,166,509원	23,694,418원
4	142,166,509원		142,166,509원	23,694,418원
5	142,166,509원	20,000,000원	122,166,509원	20,361,084원
6	142,166,509원		142,166,509원	23,694,418원
7	261,071,801원	112,380,709원 ⁵⁾ M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3,920,081원 + 대한민국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8,460,628원	148,691,092원	24,781,848원
합계	160,281,688원 ⁶⁾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망 N,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마쳐진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L호)의 1/6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은 8,115,182원이 되고, 위 제1 내지 6항 각 기재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과 모두 합하면 여전히 원고의 채권액 50,469,588원을 상회한다.			

라. 소결

결국 이 사건 상속재산분할협의는 공동담보가액과 사해행위취소를 구하는 채권자의 채권액, 그리고

수익자가 취득한 이익 중에서 가장 적은 금액인 원고의 채권액 50,469,588원의 한도 내에서
최소되어야 하고, 피고는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가액배상으로 원고에게 50,469,588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이기홍

별지

1) $7,291,060\text{원} \times [11 + 110/365 (= 2013.06.04.\text{부터 } 2024.09.21.\text{까지 } 11\text{년 } 110\text{일})] \times 20\% =$
16,479,793원

2) 사해행위 이후에 체결된 임대차계약은 고려하지 않는다.

3) 원 미만은 버린다.

4) 갑 제18호증 '가격참고자료'에 나타난 비교부동산 2개의 m^2 당 평균가액인 2,897,809원 $\times$
49.06 m^2

5) M은행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3,920,081원 + 대한민국 명의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
58,460,628원

6) 2016. 7. 20.자 근저당권설정계약에 따라 채권최고액 100,000,000원, 채무자 망 N, 근저당권자
H으로 하여 마쳐진 4번 근저당권의 피담보채권액을 100,000,000원으로 보고 이를 모두
공제하더라도 별지 목록 제7항 기재 부동산(L호)의 1/6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은 8,115,182원이
되고, 위 제1 내지 6항 각 기재 부동산의 각 1/6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과 모두 합하면 여전히 원고의
채권액 50,469,588원을 상회한다.